

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678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0. 06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0. 12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3. 10. 19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개선방안 권고사항,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받은 공유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공유임야의 대부료(사용료) 요율 조항 구체화(안 제27조)

나. 대부료(사용료) 감면 조항 정비 및 내용 추가(안 제31조)

다. 기초단체장 관사 폐지에 따른 ‘1급 관사’ 용어 삭제(안 제47~49조)

라. 관사에 대한 운영비 사용자 부담으로 개정(안 제53조)

마. 사용료(대부료)·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변경(안 19조, 6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,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-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33087(2023. 8. 25.)]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3-1355호
 - 가) 예고기간: 2023. 8. 25. ~ 2023. 9. 14.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대부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.
-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 - 대부료의 요율(안 제27조)
 -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을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용도별로 세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정비하였음.
 -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(안 제31조)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사안별 감면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음.

◦ (대부료 감면)

- ▶ 자치단체 귀책 사유로 인한 이용 제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100분의 100 감면 신설
- ▶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~다목의 공장 또는 시설 유치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을 종업원 수와 관계 없이 100분의 50으로 정비
- ▶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우선지원 대상 청년 친화적 근로 기업에 대한 대부요율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·고용재난지역·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 조정 지원을 위해 지정 고시한 지역의 재산 대부료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추가하는 등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음.

◦ (사용료 감면)

- ▶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에 따라 대부료 감면의 경우와 동일하게 재산 사용료 감면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,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한 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시의 감면을 100분의 80으로 신설하여 감면대상을 정비 및 확대하였음.

- 관사의 정의, 관사의 구분(안 제47조 ~ 제48조)

- 기초자치단체장 관사 폐지에 따라 “관사”의 정의를 정비하여 명확히 하였고, 관사 구분에 관한 사항 중 1급 관사(군수 관사)를 현행에 맞도록 삭제 정비하였음.

- 관사 운영비의 부담(안 제53조)

- 예산 지출할 수 있도록 한 부군수 관사 운영비 중 난방, 전기, 수도 등 사용자 실사용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정비하였음.

○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,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, 조례 개정으로 구체화 및 확대된 대부료 등의 요율과 감면율을 적용하고 합리적인 관사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10. 19. 원안가결